

구미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결정(변경)안에 대한 의견제시

1. 제안사유

구미시 비산동 일원에 설치된 고압 송전철탑(8기)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신규철탑1기 및 전력구를 건설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 함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, 도시 주거환경 및 주민 복지 증진에 신뢰를 확보하며 신규 철탑부지 및 송전선로 지중화 편입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이 감소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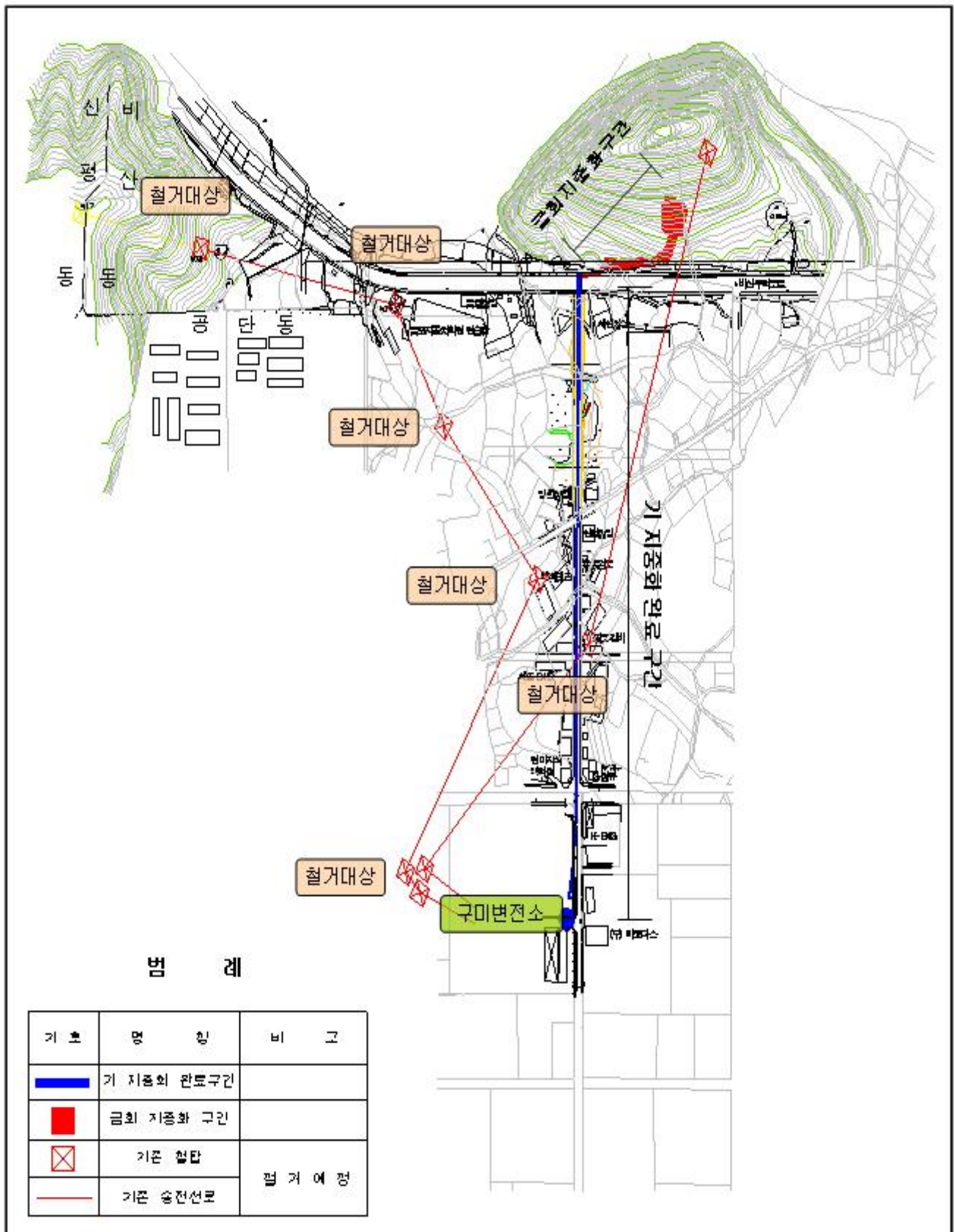
2. 주요내용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

- 사업의 명칭 : 154KV 구미 인출 전력구 공사
- 위치 : 구미시 비산동 산2-6번지, 산3번지, 산3-1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
- 사업내용 : 송전철탑 1개소, 지중 송전선로120m
- 면적 : 2,582m²
- 공원변경면적 : 기 정 - 246,848m²
변 경 - 감2,582m²
변경후 - 244,266m²

3. 붙임 : 현 황 도

□ 현 황 도



의회의견 청취 설명자료

□ 의견 청취 사유

주민 생활 불편 사항 해소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구미 변전소 주변(공단동, 비산동)에 설치된 고압철탑8기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신설되는 철탑1기 및 지중화선로 설치에 따른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기 위함.

□ 의견 청취 내용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

구 분	도면표시 변 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비산공원	2	비산공원	근린공원	비산동 산9번지 일원	246,848	감2,582	244,266	건교고 1973.12.31	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명 : 154KV 구미 인출 전력구 공사
- 위 치 : 구미시 비산동 산2-6번지, 산3번지, 산3-1번지 일원
- 사 업 내 용 : 송전철탑 1개소, 지중 송전선로120m
- 사 업 비 : 12억원(송전철탑1기 : 3억원, 지중송전선로 : 9억원)
- 사업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(대구전력구 건설처)
- 사 업 기 간 : 2006년 허가일로부터 ~ 2006년 12월 31일

※ 참고자료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」

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①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민"은 "지방의회"로 본다.